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

상명대학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"위탁자"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"수탁자"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계약은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2025년 06월 30일에 체결한 '통합증명발급 시스템 관리 및 운영' 계약(그 이후 체결된 추가 합의서 등 일체를 포함하여 이하 "원 계약"이라 한다)에 의하여 "위탁자"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"수탁자"에게 위탁하고, "수탁자"는 이를 승낙하여 "수탁자"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 "수탁자"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(통합증명발급 시스템 관리 및 운영)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2. 팩스 자동 발급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3. 무인증명발급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4. 창구 보안 발급 솔루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5. 콜센터 대행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6. 대외 서비스 연계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 (대외 서비스 연계 및 부가서비스 제공 현황 - [별첨 2] 참조)

제4조 (위탁업무 기간) 본 계약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.
계약기간 : 2025년 09월 01일 ~ 2028년 08월 31일
단, "원 계약"에서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도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하도록 한다.

제5조 (재위탁 제한) ① "수탁자"는 "위탁자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위탁자"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(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 - [별첨 1] 참조).
② "수탁자"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"수탁자"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(7)일 이전에 "위탁자"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"수탁자"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.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 ① "수탁자"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② "수탁자"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

yjchoi/2025/07/01 13:58:50

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"수탁자"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"위탁자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"위탁자"는 "수탁자"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"수탁자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외 이용.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"위탁자"는 "수탁자"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수탁자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"위탁자"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(1)회 "수탁자"를 교육할 수 있으며, "수탁자"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[1)]
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위탁자"는 "수탁자"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9조 (정보주체 권리보장) "수탁자"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.

제10조 (개인정보의 파기) "수탁자"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"위탁자"에게 확인받아야 한다.

제11조 (손해배상) ① "수탁자" 또는 "수탁자"의 임직원, 기타 "수탁자"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수탁자" 또는 "수탁자"의 임직원, 기타 "수탁자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"위탁자" 또는 개인정보주체,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수탁자"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,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위탁자"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위탁자"는 이를 "수탁자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06월 30일

"위탁자"
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
기관(회사)명 : 상명대학교
대표자 성명 : 홍 성 태 (인)

"수탁자"
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, 6층
(금토동, 다우디지털스퀘어)
기관(회사)명 :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
대표자 성명 : 조 태 묵 (인)

1) 「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yjchoi/2025/07/01 13:58:50